

#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2월 29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4년 1월 9일 회부
- 상정일자: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1월 9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도시과장)

#### 가. 제안이유

-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한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춰 방재지구의 지정을 활성화하고 재해 대응이 가능한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의2)
-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을 140퍼센트 이하로 완화(안 제58조제5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 1. 9.)

「평창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옥)

# 「평창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제출
- 제안일자 : 2023. 12. 29.
- 회부일자 : 2024. 1. 9.

### 2. 제안이유

-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한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춰 방재지구의 지정을 활성화하고 재해 대응이 가능한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의2)
-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을 140퍼센트 이하로 완화(안 제58조제5호)

## 4. 검토의견

### 가. 관련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2에서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85조제5항에서는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나. 입법의 취지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30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신설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 제58조제5호를 신설하여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용도지역에서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을 140퍼센트 이하로 정함.

##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등이 없으므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61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붙임 2]

##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평 창 군 수



#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5
----------	-----

제출년월일 : 2023. 12. 29.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에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한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나.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추어 방재지구의 지정을 활성화하고 재해 대응이 가능한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안 제30조의2)
- 나.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을 140퍼센트 이하로 완화(안 제58조제5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3. 11. 2.~11.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개발행위복합민원에 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가 5개부서 이하로서 서면협의를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개발행위허가업무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서 담당 등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개발행위허가업무 담당은 간사를 겸임한다. 단,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안건의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개발행위허가 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을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취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61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도시과장 김재열
연락처	(033) 330 - 2470